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2. 15.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

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정식부과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2.15. ~ 2017.3.3.(16일간)
3.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

성 명	주 소	위반일시	위반내용	부과금액	반송사유	관련법규
강*원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165 ***동 ****호(대동타운아파트)	2016.12.18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	50,000원	폐문부재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

4. 기 타

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5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고 72%(60개월)까지 추가로 부가되며,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,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,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,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문의처 :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(☎ 062-608-2965)